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 6556 /전송 (02)731-658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 (시청본관3층) / 법무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자 이순재

문서번호 법무11010- 2840
 시행일자 1999. 10. 12 ()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시	장
공개여부		결재 1999. 10. 12 기획예산실장 481	
기획예산	전 결		
법무담당관	박동봉	리뷰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기안자	이순재		협조
심사자	이민재	심사일	11/12

제목 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2건 발령

1.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10. 15 (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74호-675호

제 64-675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명예정일 : '99. 10. 15 (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74호-675호

- 첨부 : 1. 발명목록 1부
2. 발명안 2부. 끝.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예규 발명조치 통보

1.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증개정규정 등 2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명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발명예정일 : '99. 10. 15 (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74호-675호

첨부 : 발명목록 1부. 끝.

기밀

법 무 담 당 관

수신처 : 농수산유통과장 인사행정과장

예 규 발 령 목 록

□ 총 2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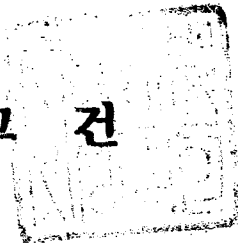
연 번	법 규 명	일 령 번 호	주 관 부 서
1	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증개정규정	제674호	농수산유통과
2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	제675호	인사행정과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축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증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개정('99.6.30)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규정을 구체화·명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4호)
- 나.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 및 경매참가 거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함 (안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이 특별히 경매참여를 제한한 자
- 다. 실효성이 상실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량 및 가격게시 조항을 삭제함 (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규제심사 :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필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증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월 무실적 : 주의
2. 2개월 연속 무실적 : 경고
3. 3개월 연속 무실적 : 허가취소
4. 분기 중 평균 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0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월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가게이신랑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
<p>제18조(최저거래금액) ①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00만원 (법인 8,000만원)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중도매인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동일처벌이 최근 1년간 3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p> <p>1. 1개월 미달 : 주의</p> <p>2. 2개월 연속 미달 : 경고</p> <p>3. 3개월 연속 미달 : 업무정지 15일</p> <p>4. 3개월 연속 무실적 : 허가취소</p>	<p>제18조(최저 거래금액)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1. 1개월 무실적 : 주의</p> <p>2. 2개월 연속 무실적 : 경고</p> <p>3. 3개월 연속 무실적 : 허가취소</p> <p>4. 분기 중 평균 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0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월</p>
<p>제20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①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 6. (생략)</p>	<p>제20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①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27조(정매참가 거부 및 단합금지) ① 도매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정매참여를 거부하거나 정매참여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p> <p>2. 시장이 특별히 정매참여를 제한한 자</p>	<p>제27조(정매참가 거부 및 단합금지) ①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3조(유통정보 공개 등) 도매법인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9397 / 전송 (02)3707-9399
 농수산유통과(서소문별관 902호) 과 장 김정중 담당사무원 김청우 담당자 구대창

분서번호 농유 51550 -
 시행일자 '99. 10.
 (경 유)
 발 율 내부집계
 참 조

보존기간		시	장
공개여부			
산업경제국장	신 권	02220	
농수산유통과장	김정중	조직제도담당관 김성남 법무담당관 심사필 축산위생팀장 김민우	
기안자	구대창		현
심사자		심사일	

★◎

제 목 축산부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1. 조직 05090-109('99. 2. 5)호 및 조직 05090-62('99. 1. 23)호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관련조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제 2 안)

수 신 법무담당관

제 목 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 발령 의뢰

1. 조직 05090-109('99. 2. 5)호 및 조직 05090-62('99. 1. 23)호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관련조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발령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방침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농 수 산 유통 과 장
 027

485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 (02) 731-6153 / 전송 731-6309
 처리부서 : 조직제도담당관(본관4층) 과장 : 정효성 사무관 : 신상철 담당 : 오세환

문서번호 조직 05090 - 109
 시행일자 1999. 2. 5.

선 결	산유공과장		지 시	
접 일 자 시 간		1999. 2. 08	결 재	조트
수 번 호	308		공 람	신상철
처리과				신위정
담당자				gline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제목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의거 제4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산업경제국 보완사항 및 교통관리실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필요 조치사항에 의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히 조례·규칙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 법령의 위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상의 규제는 중앙부처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조속 정비완료
 - 나.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절차 이행후 3월말까지 정비 완료
 - 다. 자치구 소관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시주관과에서 정비대상목록을 각자치구에 송부하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첨부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전결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

수신처 : 서과 01~70, 서본부 01~03, 서구 01~25

가락농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의 3건

연번	규제사유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	<p>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제36조)</p> <p>※양재동 양곡도매 제36조 노랑진 수산부도매 제30조 축산부도매 제24조</p>	<p>○도매법인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p> <p>(1) <u>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u></p> <p>(2) <u>업무정지 중인자</u></p> <p>(3) <u>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자</u>.</p> <p>○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 방해 및 경매·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안된다.</p> <p>※ 조례 제13조와 동일 규정임</p>	<p>○개 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제1호는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로 구체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주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익일 출하주에게 결제한 후 중도매인과는 월 2~3회 정산하고있어, 출하주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정산 확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임 제1항 제3호는 삭제
2	<p>반입물품의 제한 (제55조)</p> <p>※양재동 양곡도매 제55조 노랑진 수산부도매 제47조</p>	<p>○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u>판정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금지된 물품의 판매 수탁을 거부</u></p>	<p>○개 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명확화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하거나"는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문구는 삭제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 (02) 731-6153 / 전송 731-6309
 처리부서 : 조직제도담당관(본관4층) 과장 : 정효성 사무관 : 신상철 담당 : 오세량

문서번호 조직 05090 - 62

시행일자 1999. 1. 23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결	유용과장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재
수	번호	197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의거 제3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산업경제국소관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관련부서에서는 필요 조치사항에 의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히 조례·규칙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의 위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상의 규제는 중앙부처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조속 정비완료

나.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질차 이행후 2월말까지 정비완료

다. 자치구 소관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시주관과에서 정비대상목록을 각자치구에 송부하고, 자치구에서는 시주관과와 협의후 서울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첨부 :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산업경제국소관)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서과 01~70, 서본부 01~03, 서구 01~25

구	규제사유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7	<p>중도매업의 허가 (제20조)</p> <p>※ 양재동 양곡 제20조 노량진 수산부 제18조 속산부 제16조</p>	<p>○중도매업허가신청시 시장 에게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이력서 및 호적 등본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정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 명부 (5) 임원의 이력서 및 호적 등본 (6)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7)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p>○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허가를 추천</p> <p>○중도매인은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사무실)에 게시</p>	<p>○존치</p> <p>→ 개편</p>
8	<p>최저 거래금액 (제22조)</p> <p>※ 양재동 양곡 제22조 노량진 수산부 제20조 속산부 제18조</p>	<p>○부류별 월간 최저금액 조례 제5조와 동일한 규 정임</p> <p>○전항에서 정한 최저거래금 액기준에 미달자에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취 소를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미만: 주의 (2) 2개월 연속 미달: 경고 (3) 3개월 연속 미달: 업무 정지 10일 (4) 3개월 연속 무실적: 허가 취소 <p>○제2항의 규정중 제(1),(2) 호는 시장이 조치</p>	<p>○존치</p> <p>→ 개편</p>

연번	규제 사무명	규제 내용	정비 계획
9	<p>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제27조)</p> <p>※ 양재동 양곡 제27조 노량진 수산 제23조 축산 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업의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증금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아니한 경우 ○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수집출하 한 경우 ○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6조의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적으로 정대입찰에 불참한 경우 ○ 시설을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 및 업무규정등을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p>※ 조례 제4조 2항과 동일 규정임</p>	<p>○ 존치</p> <p>→ 개편</p>
10	<p>매매참가인 등록 (제28조)</p> <p>※ 양재동 양곡 제28조 노량진 수산 제24조 축산 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매매참가인 변경신청서) <p>※ 조례 제6조와 동일 규정임</p>	<p>○ 폐지</p>
11	<p>매매참가인 등록취소 (제29조)</p> <p>※ 양재동 양곡 제29조 노량진 수산 제25조 축산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등 수요자가 아닌자 ○ 매수대금, 기타 채무이행을 태만시 함으로써 거래관계에 현저한 손실을 끼친 때 ○ 거래실적이 6월 연속 없을 때 ○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한 때 ○ 기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p>○ 폐지</p>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2	수집상 등록 (제31조) * 양재동 양곡 제31조 노량진 수산 제27조 축산 제24조	○수집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14호서식 변경신청서는 15호서식으로 사장에게 제출	○존치
13	수집상 등록취소 (제32조) * 양재동 양곡 제32조 노량진 수산 제28조 축산 제25조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1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기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존치
14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제36조) * 양재동 양곡 제36조 노량진 수산 제30조 축산 제22조	○도매법인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됨 (1)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증명자 (3) 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 자. * 조례 제13조와 동일 규정임	○개선 - (3)호는 삭제하고 (1)호는 예치한 보증금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개선하여 다음 심사시 보고
15	자기계산매매 (제37조) * 양재동 양곡 제31조 노량진 수산 제27조 축산 제24조	○도매법인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자기계산매매 결과보고서를 3일 이내 사장에게 제출 * 조례 제15조와 동일 규정임	○존치
16	장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제39조) * 양재동 양곡 제31조 노량진 수산 제27조 축산 제24조	○수의매매 할 수 있는 품목 (별표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보증금을 납부 ○제3항에 의한 보증금 및 기타 상장의 품목거래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 조례 제15조와 동일 규정임	○존치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7	유통정보공개등 (제47조) * 양재동 양곡 제47조 노량진 수산 제41조 축산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은 별지24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등 게시 ◦ 도매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등을 별지 25호, 26호 서식으로 익일 까지 거래보고서를 사장에 제출 	◦ 폐지
18	반입물품의 제한 (제55조) * 양재동 양곡 제55조 노량진 수산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금지된 물품의 판매 수락을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생상 유해물품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구제화, 명확화하여 다음 심사시 보고
19	시설의 전대금지 (제61조) * 양재동 양곡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 중도배인 및 부속업자는 그 사용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장의 승인없이 전대나 타인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조례 제9조와 동일 규정임 	◦ 존치
20	시설사용의 규제 (제65조) * 양재동 양곡 제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감독, 재해예방, 교통정리, 보건위생상 필요시 ◦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 ◦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 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파손 하였을 때 ◦ 사용료 기타 납부금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 관계법규와 지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 조례 제11조와 동일 규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도매시장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 공공적 이용제고,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나 구제화, 명확화하여 다음 심사시 보고
21	시설의 처분제한 (제67조) * 양재동 양곡 제67조 노량진 수산 제1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시설은 개설허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나 임대하지 못함 	◦ 존치